녹색제품 구매계약 특수조건

[시행 2023.11.1.] [기타 2023.10.25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건은 한국수력원자력(주)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·용역·물품구매 계약(이하 "구매 등 계약"이라 한다)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녹색제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녹색제품"이라 함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(이하 "녹색제품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을 말한다.
2.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제품법, 시행령, 시행규칙 및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구매이행 준수의무) 구매 등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납품하여야 할 물품이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한다. 다만, 당해 물품의 공급지연 등의 사유로 납품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에게 사유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4조(녹색제품 입증) ① 계약상대자는 중간자재로 사용하거나 납품하는 물품이 녹색제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.
② 계약상대자는 녹색제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완성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중간자재로 녹색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거래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20.5.11.>

1. 녹색제품법 제2조의2제1호 및 제1의2호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
2. 녹색제품법 제2조의2제2호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
3. 녹색제품법 제2조의2제3호 규정에서 정한 상품이라는 증빙서류

제5조(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)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설계서, 과업지시서 및 물품구매 규격 등에서 정한 녹색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 <개정 2023.10.25.>

제6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) 계약상대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증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당사 계약규정시행세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.

제7조(기타사항) 계약상대자(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)는 설계서, 과업지시서 및 물품구매 규격 등에서 정한 녹색제품 이외에도 신규로 지정되는 녹색제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한다.

부칙 <2023.10.25.>

이 기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